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44 발의연월일: 2022. 10. 18.

발 의 자:이주환·하영제·박대수

전봉민 · 김용판 · 정동만

지성호 · 김학용 · 양금희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의 경우 농지처분의무 및 농지처분명령 회피 방지를 위하여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가 농업법인인경우에는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등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임.

이에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농업법

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 써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법인의 농지 처분 상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u>
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	<u>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u> 하
다.	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